



#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」 변경 알림

---

### 1. 관련

- 가. 중수본-16903호('21.5.27)호, 17199('21.5.31)호, 「격리면제서 발급 안내」
- 나.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(중대본 보고, '21.6.13)
- 다. 중수본-18838호('21.6.15.), 19544호('21.6.22.)호 「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」

2. 위 호와 관련, 「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」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, 관계기관에서는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및 민원대응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주요 개정내용

-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1회 입국시 사용, 재사용 불가 안내
- 격리면제서 신청서에 국내 **출입국 예정일**, 항공편, 격리면제기간 **작성으로 변경** (인도적목적(직계가족 방문) 제외)
  - . 격리면제서 심사부처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자 관리(입국 후 6~7일차 PCR 진단검사 등)를 위하여 항공편 등 입국일정 작성 의무화
- PCR 음성확인서 인정방식 변경
  - . PCR 음성확인서 인정언어(국문/영어) → PCR 음성확인서 '검사방법 항목' 인정언어(국문/영어)
- 재외공관(대사관, 영사관 등) 및 국제기구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국내로 귀임 하는 경우, 공무원 및 그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소관부처의 필요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
- 관계부처 의견에 따른 일부 내용 변경
- 질의응답 추가

- 붙임 1.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변경 1부.  
2.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변경비교표 1부.  
3. 격리면제자 정보(엑셀 양식) 1부. 끝.

